

「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10월 7일, 이창열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4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10월 1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(안 제4조)
-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(안 제5조)
- 조성사업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사업 위탁(안 제6조,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부.

[붙임 1]

「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10. 8.
- 회부일자 : 2024. 10. 14.
- 상정일자 : 2024. 10. 14.

2. 제안이유

-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(안 제4조)
-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(안 제5조)
- 조성사업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사업 위탁(안 제6조,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에서 장애인·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설치, 지원 단체 경비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제47조의4에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관광환경에 대한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자체계획 수립)에서 기본방향 및 목표, 재원확보 방안 등이 담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게 함.
- 안 제5조(관광환경 조성사업)에서 우리 군의 관광약자를 위한 사업을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<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>

1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
2.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
3.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
4.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
5.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
6.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7.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안 제6조(재정지원) 및 제8조(위탁)에서는 관련 사업을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, 사업 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관광 향유권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, 고령자 등의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시책 추진을 통해 보편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수권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지자체	내용	비고
평창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월 과정의 ‘관광약자 관광가이드(트레블헬퍼) 양성교육 운영 중, 2023년 첫 수료생 배출 	
서울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7년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, 임산부, 영유아 동반인 등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‘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’을 수립. - 무장애 관광 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’을 발간 - ‘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’을 통해 점자안내판·점자블럭과 완경사보행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여의도공원·보라매공원·용산가족공원 등 시내 12개 주요 공원에 설치 완료 	
경기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무장애 경기관광’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(VR) 서비스를 제공 중 - ‘경기도 무장애 관광 - 관광업계 종사자 서비스 매뉴얼’ 창간 및 교육 - 양평 두물머리, 오산 울향기수목원,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 215개소의 정보를 음성안내로 제공하고, VR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함 - 관광숙박시설 46개소의 객실·주차장·화장실 등 경로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	
대구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4년부터 ‘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’ 누리집을 운영. - 주요 관광지 내 휠체어 추천코스 와 저상버스·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 -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관광약자 편의 정보도 함께 제공 	
광주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티버스를 개조해 ‘무장애 광주시티투어’를 운영 중 - 2022년부터 주요 관광지에 시각장애인 전문 관광해설사를 배치 	
울산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년 ‘대왕암공원 무장애 관광안내 지도’를 제작, 보행의 어려움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표기함. 무장애 관광안내 지도는 확대할 예정 	
제주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 최초로 ‘제주 휠내비길’ 앱을 개발해 휠체어 이동 경로를 안내 - 2022년부터 제주돌문화공원·북촌마을·올레길 1코스 등 30개 주요 관광지에서 길안내 제공 - 관광객은 위치정보단말기를 대여해 지참하면, 연결된 휴대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최적경로를 안내받아 편리한 여행 가능 - 이동 중 음성안내도 제공되며, 경로이탈 시 경고음을 발신해 주의 환기 - 무장애 여행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, 관련 기술의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들도 적극 지원할 계획 	

[붙임 2]

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33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10월 7일

발 의 자: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: 박춘희, 김광성, 심현정 의원

1. 제안이유

평창군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다. 관광환경 조성사업(안 제5조)

라. 재정지원 ~ 협력체계 구축 등(안 제6조 ~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 : 2024. 9. 6. ~ 2024. 9. 25.(20일간), 의견 없음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4. 8. 20. ~ 2024. 8. 30.(11일간), 의견 없음

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“관광약자”란 관광취약계층,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관광취약계층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(이하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
3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

4.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관광환경 조성사업)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
2.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
3.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
4.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
5.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
6.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7.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재정지원)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,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주민 참여의 촉진)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8조(위탁)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관련 법인,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 내 시·군, 관광 관련 전문기관, 민간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

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< 관광진흥법 >

제47조의3(장애인·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·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·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·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7조의4(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.

< 관광진흥법 시행령 >

제41조의3(관광취약계층의 범위)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 - 다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 - 라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4. 그 밖에 경제적·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제5조(관광환경 조성사업)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
2.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
3.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
4.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
5.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
6.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7.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장 김복재
연락처	(033) 330 - 2250